

예명대학원대학교 학칙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교역자 양성을 위하여 성정을 정심하게 연구하고 교역자의 지도적 인격과 독창적 능력을 함양하며, 신학의 학술적 발전과 선교사역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교는 예명대학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칭한다)라 한다.<개정 2015.10.1.>

제3조(조직) 본교에는 학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총장과 그 하부조직으로 기획처, 교학처, 사무처, 도서관 등을 둔다.<개정 2023.4.18.>

제4조(과정) 본교에는 석사학위과정, 박사학위과정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 및 단기선교과정을 둘 수 있다.<개정 2014.6.19., 2021.8.26.>

제5조(과정별 학생정원) ① 본교에 두는 과정별 학생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14.6.19., 2020.5.14.>

1. 석사학위과정: 73명
2. 박사학위과정: 15명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원 외에 따로 있는 것으로 한다.<신설 2014.6.19.>

1. 본교에 입학·편입학 또는 재입학하는 다음 각 목의 학생

- 가.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
- 나. 북한 이탈주민
- 다. 외국인

라.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과 학사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

2.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원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

3.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8조제1항, 제30조에도 불구하고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, 제9조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

제5조의2(자체평가) ① 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.<신설 2021.8.26.>

② 자체평가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<신설 2021.8.26.>

제2장 수업 및 재학연한, 학기, 수업일수

제6조(수업연한) ①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4학기(4학기)로 한다. 단 목회학전공(M.Div.)은 3년6학기(6학기)로 한다.<개정 2014.6.19.>

②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6학기(6학기)로 한다. <개정 2014.6.19.>

제7조(재학연한) ① 본교의 재학연한은 석사과정은 5년(신학석사과정(M.Div.)은 6년), 박사과정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.<개정 2014.6.19.>

② 대학원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재학연한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<신설 2014.6.19.>

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.

제8조(학기)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누며 따로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.

1. 가을 학기: 9월1일부터 다음 년도 2월 말일까지

2. 봄 학기: 3월1일부터 8월 말일까지

3. 계절학기는 하기 및 동기 방학 중에 둘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9조(수업일수)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할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.<개정 2014.6.19.>

제9조의2(수업) ① 수업은 주간, 야간, 주말 또는 계절제로 자율 운영하되, 필요할 경우 통신에 의한 원격수업을 실시 할 수 있다.<신설 2014.6.19., 개정 2017.7.4.>

② 전공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은 다른 전공과의 합동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.<신설 2014.6.19.>

제9조의3(교원의 교수시간)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보직교원 등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<신설 2020.8.4.>

제9조의4(집중이수제)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교과목별 학점당 이수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집중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.<신설 2023.4.18.>

제10조(휴업일) 정기휴업일은 하기방학, 동기방학, 법정공휴일 및 개교기념일로 하며, 비상재해 등 필요할 경우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.<개정 2020.5.14.>

제3장 입학

제11조(입학) ① 본교의 입학 시기는 매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.

② 입학전형은 일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.<신설 2014.6.19.>

제12조(입학자격) 본교에 입학할 지원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6.19.>

1. 석사학위과정

- 가. 국내·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
- 나.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
2. 박사학위과정

- 가. 국내·외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
- 나.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
제13조(입학전형) 각 과정은 세칙 및 내규에서 정하는 입학 전형 방식에 따르며 과정에 따라 입학시험이 부여된다.<개정 2014.6.19.>

제13조의2(지원절차) 본교에 입학할 지원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한다.<신설2014.6.19.>

제14조(재입학) ① 본교에서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는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<개정 2014.6.19., 2023.4.18.>

② 제27조의10제1항에서 정의한 논문제출시한을 연장 받은 자가 제적된 경우에는 재입학할 수 없다.<신설 2014.6.19.>

③ 제19조의2, 제34조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.<신설 2014.6.19., 개정 2023.4.18.>

제15조(편입학) ① 타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는 여석이 있을 경우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<개정 2014.6.19., 2020.5.14., 2023.4.18.>

② 편입학에 관한 내규는 따로 정한다.<신설 2014.6.19.>

제4장 등록, 휴학, 복학, 자퇴, 제적

제16조(휴학) ① 한 학기의 수업일수의 3분의1 이상을 결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교학처장과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14.6.19.>

② 학생 휴학의 총기간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 2년(4학기), 목회학석사 3년(6학기), 박사 과정은 3년(6학기)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군복무기간, 출산 및 육아기간(1년)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.<신설 2014.6.19., 개정 2017.1.22.>

③ 신입생 및 재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은 휴학을 할 수 없다. 단,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하게 하며 그 외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학하게 할 수 있다.<신설 2014.6.19., 개정 2017.1.22.>

1. 「병역법」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
2.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
3.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상의 이유
4. 그 밖에 학칙 또는 규정으로 정하는 사유

제16조의2(육아휴학) 총장은 학생이 만 8세이하(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를 말한다.)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 휴학을 원하면 휴학하게 할 수 있다.<신설 2017.1.22.>

제17조(복학) 휴학한자로서 복학을 원하는 학생은 정하여진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복학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6.19.>

제18조(자퇴)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<개정 2014.6.19.>

제19조(제적) ①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.

1.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의 기간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
2. 재학연한내에 모든 과정을 필하지 못한 자
3. 삭제<2023.4.18.>
4. 기독교 진리에 위배되거나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

②학생이 제16조, 제17조, 제20조, 제27조의10의 학칙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제27조의3, 제34조에 의하여 제적처분 받은 자는 제적된다.<개정 2014.6.19.>

제19조의2(학위취소) 학위를 수여받은 자가 학위가 취소될 경우 제적된다.<신설 2014.6.19.>

제20조(등록 및 등록금)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등록을 하여야 하며, 등록 시 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6.19.>

1.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처음 4학기(M.Div.는 6학기), 박사과정은 6학기를 정규등록하여야 하며, 이후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.
2.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학위수여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정규등록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.

제20조의2(등록생의 권한) 정규등록을 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,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지도를 받을 수 있다.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학위논문 연구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, 과정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. 다만, 추가로 학점을 이수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.<신설 2014.6.19.>

제20조의3(등록금의 대체 및 반환) 등록금을 납입한 후 휴학 및 자퇴를 할 경우 등록금 반환을 원칙으로 하며 반환금액은 관계법령 및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단, 징계, 제적 등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.<신설 2014.6.19.>

제21조(수강신청)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매 학기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.

제5장 교육과정, 교과이수, 취득학점, 성적관리

제22조(교육과정 및 교과이수) 학생이 이수해야 할 교과목은 교과과정표에 의하며,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<개정 2014.6.19.>

제23조(이수단위) 교과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1학기 동안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.

제24조(취득학점) ① 본교의 학생이 취득해야 할 최저학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.<개정 2014.6.19.>

1. 석사과정의 논문제출 과정은 30학점, 비논문 과정은 33학점으로 한다. 단, 사회복지학 전공 논문제출 과정은 33학점<개정 2015.10.1.>
2. 신학석사과정(M.Div.)은 78학점
3. 삭제<2015.10.1.>
4. 박사과정은 42학점(논문 6학점 포함)

② 삭제<2023.4.18.>

제25조(타 대학원 학점인정) 본교와 협정관계에 있는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본교에서 이수한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할 수 있다.

제26조(수료) ①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한다.

②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제6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마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학생은 과정 수료가 된다.<신설 2020.8.4.>

제27조(성적관리) ① 학업성적의 평가와 등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.<개정 2014.6.19., 2021.8.26.>

등급	평점	점수	등급	평점	점수
A ⁺	4.0	100-96	D ⁺	1.0	69-66
A ^o	3.5	95-90	D ^o	0.5	65-60
B ⁺	3.0	89-86	F	과락	59이하
B ^o	2.5	85-80	P	불계	합격
C ⁺	2.0	79-76	NP	불계	불합격
C ^o	1.5	75-70			

② 학점인정은 수강과목별 출석률이 강의 실시시간의 3분의 2이상이고, 학업성적이 D등급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인정하며, 각 과정의 수료 사정 시 전체 학점 평균은 석사과정의 경우 2.5 이상, 박사과정의 경우 3.0 이상으로 한다.<개정 2020.8.4.>

③ 학점의 등급은 4등급제(A⁺,A^o,B⁺,B^o,C⁺,C^o,D⁺,D^o)로 한다.

④ 졸업을 위해서는 본교가 정한 선수, 필수, 각종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 석사과정(논문제출과정)과 박사과정의 경우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(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)과 논문심사를 통과하여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.<개정 2023.4.18.>

⑤ 졸업예정자는 교수회에서 졸업사정을 거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8.4., 2021.8.26., 2023.4.18.>

제27조의2(수료사정 및 졸업사정) 수료사정 및 졸업사정은 연 2회 실시한다.<신설 2014.6.19., 개정 2020.8.4.>

제27조의3(학사경고) 매학기 성적의 평량 평균이 1.5 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며 학사경고를 총2회 받을 경우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. 단,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학사경고를 1회 받게 되면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.<신설 2014.6.19., 개정 2020.8.4.>

제6장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

제27조의4(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) ① 학생은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(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)에 합격한 자가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<신설 2014.6.19., 개정 2023.4.18.>

②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
제7장 학위논문

제27조의5(연구계획) 직전 학기까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.<신설 2014.6.19.>

제27조의6(논문작성) 연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학생은 석사학위과정에서는 1학기 이상, 박사학위과정에서는 2학기 이상 논문(연구)지도를 받은 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<신설 2014.6.19., 개정 2023.4.18.>

제27조의7(논문규격 및 논문제출) ① 학위논문은 지도교수의 승인에 따라 한글 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.<신설 2014.6.19., 개정 2021.8.26.>

②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논문의 규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③ 완성된 학위논문은 논문지도교수 또는 교학처장의 허락을 받아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7조의8(심사위원 및 심사위원장) ① 학위논문의 지도교수와 교학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은 심사위원이 이를 심사한다. 심사위원은 석사학위의 경우 3인,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5인으로 한다.<신설 2014.6.19.>

②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본교 소속 1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여 심사를 주도하

게 할 수 있다. 심사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.

제27조의9(심사의결 및 재심사) ① 학위논문 심사의 합격은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3분의 2,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5분의4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.<신설 2014.6.19., 개정 2023.4.18.>

② 학위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학생은 적정한 수정·보완을 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.<개정 2023.4.18.>

제27조의10(논문제출 시한) ① 학위논문은 석사학위과정인 경우 입학일로부터 5년 이내, 박사학위과정은 7년 이내에 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.<신설 2014.6.19.>

② 휴학 및 제적기간은 위 제1항의 시한에 산입하지 않는다.

③ 각 학위과정의 학생으로 수료 요건이 충족된 자에 한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다. 단, 이 기간에는 휴학할 수 없다.

제8장 공개강좌, 연구생, 청강생, 외국인 학생

제28조(공개강좌) ① 본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 할 수 있다.

② 공개강좌는 직무, 교양 또는 연구를 위한 학식 또는 기술, 선교 및 목회 실천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행할 수 있다.<개정 2021.8.26.>

③ 공개강좌의 과목, 수강인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며 본 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.

제29조(연구생)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 목회나 신학교육에 대한 사명이 분명한 자들에 대하여는 연구과정의 학생으로서 입학할 수 있다.<개정 2021.8.26.>

제29조의2(청강생) ① 청강은 학위의 취득 없이 본교의 학문적 성과를 습득하기 원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1.8.26., 2023.4.18.>

②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담당 교수의 허가에 의해 청강할 수 있다.<개정 2021.8.26.>

③ 청강생은 소정의 청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<개정 2021.8.26.>

제30조(외국인입학) ① 외국인으로서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어 사용능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여야 하며,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개정 2014.6.19., 2023.4.18.>

② 본교에서 지정한 전공은 외국인을 위한 영어사용과정(영어트랙)의 학위과정을 들 수 있으며, 이에 입학이 허락된 학생은 한국어 사용능력에 구애되지 않는다.<신설 2014.6.19., 개정 2017.7.4.>

③ 외국인을 위한 이중언어과정의 학위과정을 들 수 있다.<신설 2017.7.4.>

제9장 학생활동, 장학금 및 상벌

제31조(학생활동) ① 본교 학생의 자치 활동기구로 학생회를 둔다.

② 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<개정 2014.6.19.>

③ 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되, 학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.<신설 2014.6.19.>

④ 학생은 학업 및 학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<신설 2014.6.19.>

⑤ 학생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.<신설 2014.6.19.>

⑥ 휴학생은 학생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으며 학생회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.<신설 2014.6.19.>

제32조(장학금 및 연구비) 본교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제33조(포상) 학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타의 모범이 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포상 할 수 있다.

제34조(징계) ①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.<개정 2014.6.19.>

②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<신설 2014.6.19.>

제10장 대학원위원회

제35조(구성) ① 본교에는 대학원 운영에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총장, 부총장, 각 처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총장은 위원장이 된다.<개정 2014.6.19., 2023.4.18., 2024.4.29.>

제36조(심의사항)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입학·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
2.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·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
3.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
4.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5.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37조(소집 및 의결) 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,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.<개정 2014.6.19.>

제11장 학위수여

제38조(학위수여 및 명예졸업) ① 학위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과정별로 졸업 조건을 충족한 자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.<개정 2014.6.19., 2023.4.18.>

②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.<개정 2014.6.19.>

1. 석사과정: 신학석사(M.Div., Th.M.) · 문학석사(M.A.)<개정 2020.8.4.>

2. 박사과정: 철학박사(Ph.D.)<개정 2020.8.4.>

3. 제1호와 제2호의 세부 학위명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<신설 2020.8.4.>

③ 본교에 학적을 두었다가 제적된 자 또는 본교에 학적이 없는 자로서 본교의 명예를 빛낸 자 또는 특별한 사유로 졸업하지 못한 자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신설 2015.10.1.>

④ 국내외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따라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<신설 2019.2.1.>

제39조(학위기) 석사 및 박사 학위 수여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학위기로서 총장이 수여한다.<개정 2014.6.19.>

제40조(심사료) 석사 및 박사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6.19.>

제12장 학칙 개정절차

제41조(개정) ① 본 학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안을 사전공고하고 대학원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이를 공포한다.<개정 2014.6.19., 2014.12.20., 2020.5.14.>

② 삭제<2014.12.20.>

③ 학칙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사무처를 경유하여 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.<신설 2014.12.20., 개정 2020.5.14.>

제13장 교수회<신설 2014.6.19., 개정 2020.5.14.>

제42조(교수회) 학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둘 수 있다.

제43조(구성) 교수회는 본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20.5.14.>

제44조(소집과 개회) ① 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 교수회는 재적 전임교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.

제45조(기능) 교수회는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

한다.

1.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
2.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
3.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
4. 각종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
5. 입학, 진급 또는 졸업에 관한 사항
6.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
7. 기타 중요사항

제14장 대학원운영위원회<신설 2014.12.20.>

제45조의2(기능) 본 위원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교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한다. 대학원운영위원회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.

제45조의3(구성) ①대학원운영위원회는 총장, 부총장, 각 처장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23.4.18.>

②총장은 필요한 경우 특정한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단장 등을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.

제45조의4(소집) 대학원운영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제15장 계약학과의 설치·운영<신설 2014.6.19.>

제46조(산업교육을 위한 학과의 설치)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본교에 산업교육을 위한 학과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47조(계약학과 명칭) 제46조에 따라 본교에 설치한 계약학과의 명칭·학위과정 및 정원은 계약학과 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한다.<개정 2015.10.1.>

제48조(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)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은 석사와 박사학위과정으로 하고 전문성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16장 부설연구기관<신설 2014.4.24., 개정 2020.5.14.>

제49조(부설연구기관) ① 본교에 학술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설연구기관을 둔다.<개정 2015.10.1., 2020.5.14.>

1. 평생교육원

- 2. 레마성서연구원<개정 2020.5.14.>
 - 3. 어학교육원
 - 4. 예명상담센터<신설 2020.5.14.>
- ② 부설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<개정 2020.5.14.>

제17장 부속기관<신설 2019.12.29., 개정 2020.5.14.>

제50조(부속기관) ① 본교에 다음과 같이 부속기관을 둔다.

- 1. 도서관
- ② 부속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18장 보 칙<신설 2020.5.14.>

제51조(시행세칙)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<신설 2020.5.14.>

부 칙

- 1. 본 학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1. (시행일 및 경과조치)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의 학칙 변경사항(2003.3.1., 2002.9.1., 2004.9.1., 2009.6.1., 2011.9.1., 2013.3.1.)은 절차를 거쳐 2014년 6월 19일로 통일 적용한다. 단, 학생과 연관된 해당 조항은 2013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- 1. (시행일) 본 학칙은 201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- 1. (시행일) 본 학칙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(학교명 변경)
- 1. (시행일) 본 학칙은 2017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- 1. (시행일) 본 학칙은 201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.
- 1. (시행일) 본 학칙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1. (시행일) 본 학칙은 201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- 1. (시행일) 본 학칙은 202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- 1. (시행일) 본 학칙은 2020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.
- 1. (시행일) 본 학칙은 202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- 1. (시행일) 본 학칙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1. (시행일) 본 학칙은 202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서식 제1호)<개정2015.10.1., 2016.5.12.>

석/박사 제○○호

학 위 기

성 명: ○ ○ ○
○○○○년○월○일생

위 사람은 본 대학원대학교 석/박사 과정을 마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○○박사(○○전공)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.

논문제목:

20 년 월 일

예명대학원대학교 대학원위원회

위 증명에 의하여 ○○박사의 학위를 수여함.

학위등록번호: 예명대(박)-○○호

20 년 월 일

예명대학원대학교 총 장

(학위) 000 (인)

(별지서식 제2호)<개정2015.10.1.>

제 호

수 료 증

성 명:

년 월 일생

위 사람은 본 예명대학원대학교 ○○○○ 과정을
○년간 연구하고 이를 수료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.

20 년 월 일

위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.

20 년 월 일

예명대학원대학교 총 장

(학위) 000 (인)